



산업통상자원부

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6.11.)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(2단계)를 연장**하면서,
 -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.6.1.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.1. 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○ 적용 기간 : 2021년 6.14.(0시) ~ 2021년 7.4.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**수도권**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< 완화 불가조치 사항 >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편 및 홀덤편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

①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(무도장 포함),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

○ 조치 내용 : **집합금지**

붙임 1. 수도권 유흥시설,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1부

○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2.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②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스포츠키팀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백화점·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 3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수도권 숙박시설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4.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④ 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

붙임 5.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고위험사업장

○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8.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⑥ 직장근무

○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

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

- 밀폐·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의무화

○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
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**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
⑨ 그 외

- 종교시설
 - 방역지침 의무화
 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
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
에 따라 적절한 방역 수칙 적용
- 교통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 - 방역지침 의무화
- 국공립시설
 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 운영 중단,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, 이외 시설
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 원칙
 - 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
·지자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
-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
- 사회복지 이용시설
 -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- 기타시설
 - 대상시설: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마·경정*, 미술관·박물관,
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·안마소, 국제회의 시설
 - * '경륜, 경정, 경마'은 운영중단 유지
 - 조치내용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
소속 기업에 전파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
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
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.
2.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

박혜수

과장

전결 2021. 6. 15.

김재준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698 (2021. 6. 15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